

부속서 8-나¹ 통신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 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 할 수 없는 것

상호접속이란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경우,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란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본국 공중 통신 망이 위치한 영역 밖에서 음성, 데이터 또는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의 본국 모바일 단말기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들 간 상업적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상업적 모바일 서비스를 말한다.

면허란 어떠한 인이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러한 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양허, 허가 또는 등록을 포함하는 모든 승인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 요소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에 이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범주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에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공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공중 통신 기반을 말한다.

공중 통신 서비스란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요구하는 모든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지점 간의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을 포함할 수 있고, 부가서비스는 제외한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메시지, 음향, 영상, 또는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통신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용자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그리고

부가서비스란 제고된 기능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에 가치를 추가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당사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에 각각 정의된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적용범위

2. 이 부속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통신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조치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그 밖의 조치, 그리고

라. 부가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조치

3.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망으

로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

접근 및 이용

5.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에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나.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통하여 개별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다.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 간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와 접속하거나,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 회선과 접속하는 것

라. 교환, 신호, 처리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마. 모든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7.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자국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또는

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10.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이 제9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그리고

다.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요건

경쟁보장장치

1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12. 제11항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다.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번호이동성

1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

일반조건

1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것을 요구받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 및 효율에 따라
- 나.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품질로
- 다. 시기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그리고

라.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

15.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16.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망 요소 세분화

17.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으로 제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되는 망 요소와 그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는 공급자를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전주, 관로 및 도관에 대한 접근

1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이 결정한, 지배적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시기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 및 효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9.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제 18항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전주, 관로, 도관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을 결정

할 수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접근의 부족에 따른 경쟁적 효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러한 구조물이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그 밖의 특정한 공익 요인과 같은 요인을 고려한다.

부가서비스의 공급조건

20.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이 부가서비스의 공급자로 분류한 자국 영역의 기업으로서 그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설비를 통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그러한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할 것
- 나. 그러한 서비스 효율을 비용상 정당화할 것
- 다. 그러한 서비스의 효율표를 제출할 것
- 라.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자사 망을 특정 고객과 연결할 것, 또는
- 마. 공중 통신 망 외의 다른 망에 연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의 특정 표준 또는 기술 규정을 준수할 것

21. 제20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있어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한 부가서비스 공급자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달리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0항에서 기술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 모바일 로밍

2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성장 촉진 및 소비자 복지 향상에 일조할 수 있는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효율 증진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3. 당사국은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에 대하여 투명성과 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소비자가 소매 요금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나. 소비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방문할 때 자신이 선택한 기기를 이용하여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로밍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한다.

보편적 서비스

24.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25.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보장한다.

허가 절차

26. 당사국이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가.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나.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당사국이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기간, 그리고

다.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27.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취소, 갱신 거부 또는 조건 부과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통신규제기관

28.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모든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일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지분²을 소유하거나 운영 또는 경영 역할을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9.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한다.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30.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자국의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31.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한다.

32.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제8.3조에 불합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통신규제기관 외의 당사국 정부기관이 통신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통신 분쟁의 해결

33.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이의신청

- 가. 1)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제5항부터 제19항까지에 규정된 사안에 관한 조치와 관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 분쟁을 시기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2)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면허를 획득하고,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는, 그 공급자가 상호접속을 요청한 후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조건과 요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적 재심사

- 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신의 이익이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공급자는,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당국에 의하여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달리 판정하지 않는 한, 사법적 재심사의 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투명성

3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관련 정보가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 가. 서비스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 나. 그러한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 다. 그러한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의 준비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 라.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 마. 통보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기술 선택의 유연성

- 35.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그들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기술을 선택할 유연성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36. 제35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공중 통신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야 하고,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입안, 채택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